

제 9 장 정부조달

제 9.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이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서,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정문(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¹⁾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가.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나호 및 제2항)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개정 정부조달협정 제5조)

다. 참가조건(개정 정부조달협정 제8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

1) 2007년 11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negs 268(Job No[1].8274)에 포함되었다.

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사전 작업 경험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기구(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1조), 그리고

마. 최종 규정(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2조)

5. 제4항에 따른 개정 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목적상,

가.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란 “비당사자”를 말하며, “협정의 당사자”란 “당사자”를 말한다.

나.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그 밖의 당사자”란 “다른 한 쪽 당사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위원회”란 “작업반”을 말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9에서 정의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이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의 적용을 받는다.

제 9.3 조 정부조달 작업반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회부된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

나.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의 논의